##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17.12.29

개정 2018.10.17

개정 2020.03.30

개정 2022.02.07

개정 2022.10.13

[감사기획부 042-600-8279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감사규정시행세칙 제27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감사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- 1. 중요 감사처분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10.17., 2022.10.13.>
- 2.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감사활동 개선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감사가 요청하는 사항
- 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며,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 운영할 수 있다..<개정 2018.10.17.><개정 2020.3.30., 2022.2.7., 2022.10.13.>
  - ②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가 위촉한다.
  - 1.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, 노무사, 국제내부감사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<개정 2018.10.17>
  - 2.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
  - 3. 공기업에서 1급 직원 및 임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감사분야 경력이 있는 자
  -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  - 5. 공사에서 1급으로 재직한 전문직 직원<신설 2018.10.17>
  - 6.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<개정 2018.10.17>
- 제4조(해촉) 감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
  - 2. 제3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  - 3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<신설 2022.10.13.>
  - 4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신설 2022.10.13.>
  - 5. 직무대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신설 2022.10.13.>

- 6.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신설 2022.10.13.>
- **제5조(대표위원과 간사)** ① 대표위원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개정 2018.10.17>
  - ②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  - 직무를 대행하되, 위촉된 날짜가 동일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.<개정 2018.10.17>
  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대표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감사실장이 한다.<개정 2020.3.30 >
- **제6조(임기)**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17> ② 내부위원의 임기는 퇴직시까지로 한다.<신설 2018.10.17>
- 제7조(제척·회피·기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.<개정 2022.10.13.>
  - 1. 위원회 위원과 관계 있는 사항
  - 2. 위원회 위원과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
  -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요청 받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0.13.>
  - ③ 안건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13.>
- **제8조(회의)**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으로 할 수 있다. 단, 특별사안 발생 시 감사의 요청에 의해 개최 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17., 2022.10.13.>
- 제9조(자료제출 등 협조)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0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위촉시에 별지 제1호 '서약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22.10.13.>
- **제11조(경비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17>
- 제12조(기타)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<u>서 약 서</u>

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,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. . .

위원 (인)